

의안번호	제 47 호
의 결 연 월 일	2006년 월 일 (제 255 회)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필용의원 외 9인
발의연월일	2006년 11월 10일

충청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7
----------	----

발의연월일 : 2006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이필용 · 한창동 · 김범기
최미애 · 이규완 · 이언구
최광옥 · 이대원 · 김화수
김환동(10인)

제정이유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효율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3가지의 경우로 제한함(안 제4조제1항).
- 나. 금고지정은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설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함(안 제4조제2항).
- 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함(안 제5조).
- 라. 금고지정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

사회 기여도, 금고업무 관리 능력, 도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을 기준으로 함(안 제6조)

마. 금고지정 방식 결정,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
위원회를 둠(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도의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
무사, 관계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7조제3항)

사.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며, 심
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함(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아. 금고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취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금고”라 함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경쟁방법”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수의방법”이라 함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충청북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금고약정”이라 함은 도지사와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①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지정기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충청북도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3.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충청북도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충청북도 소속 관계공무원 2인

④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약정만료 4월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

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도지사는 금고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만료 최소 3월전 까지 도보 등에 공고 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토록 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 약정) ①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도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

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①도지사는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하며, 금고의 약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참석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금고 약정은 그 만료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0조 (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81조 (공금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4조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의 금고보관) ①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출납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를 취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금고에 보관시켜야한다. 다만,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